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4. 12 선고 2022가단952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8. 12. 24. 접수 제91723호로 마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C, 피고(C의 딸이다)의 관계 및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관한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C,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3. 6.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5. 4. 17. 1/2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150,000,000원은 2015. 4. 17. 피고의 명의로 받았으며, 피고가 그 대출금 전부를 변제하고 있다.

다. C는 주문 기재와 같이 2018. 12. 18.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8. 12.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는 증여한 위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1 내지 3의 각 기재,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C는 위 증여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C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증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C의 경제력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그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1/2 지분에 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별지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 12. 18.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원고는 2022. 11. 1. 증여행위를 알고 2022. 12. 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것으로 보인다).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